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0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1. 9. 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1. 8. 27.
- 회부일 : 2021. 8. 31. (의안번호 : 21-77)

2. 제안이유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급대상의 확대 (안 제1조)
- 평가기준(별표)의 신설 (안 제5조)
- 정액 및 차액 지급규정의 신설 (안 제7조)
- 지급정지 사유의 구체적 규정 (안 제9조)

4.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등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 장학금 선발 대상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함.
- (안 제5조)에는 평가기준(별표)의 신설함.
- (안 제7조)에는 정액 및 차액 지급규정의 신설함.
- (안 제9조)에는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통장은 일선 지방행정의 보조기관의 성격으로 주민의 의견 또는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 협력을 요구하는 등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 또한, 통장은 동의 문제점이나 주민들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의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을 보조하는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지급대상을 중·고교생으로 제한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기준과 달리 대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기준 공납금 지급 규정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 2020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변경에 따라
 - 제1조 및 제3조에는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 명시함.
 - 제5조에는 장학생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자 평가표를 신설함,
 - 제7조에는 정액지급 규정,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함.
 - 제9조에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구체화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3조 장학생의 자격에 통장의 근속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상향한 점은 타구의 통장 근속기간이 평균 1년인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고, 통장의 역할에 대한 대우를 위한 장학금제도인 만큼 마포구 통장의 사기진작의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1 > 서울시 자치구 통장자녀장학금의 '통장 근속기간' 비교

연명	자치구명	통장 근속기간	비고
1	강남구	1년	
2	강동구	1년	
3	강북구	-	미지급(조례 폐지 : 2001. 9. 28.)
4	강서구	-	미지급(조례 폐지 : 2019. 7. 17)
5	관악구	1년	
6	광진구	1년	
7	구로구	1년	
8	금천구	근속기한 없음	
9	노원구	근속기한 없음	
10	도봉구	1년	
11	동대문구	1년	
12	동작구	1년	
13	마포구	1년	
14	서대문구	근속기한 없음	
15	서초구	1년	
16	성동구	1년	
17	성북구	근속기한 없음	
18	송파구	-	미지급(조례 폐지 : 2016.3.10.)
19	양천구	1년	
20	영등포구	근속기한 없음	
21	용산구	근속기한 없음	
22	은평구	1년	
23	종로구	1년	
24	중구	근속기한 없음	
25	중랑구	1년	

< 관계법령 >

붙임1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붙임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7. 30., 2014. 11. 19., 2017. 7. 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30.]

○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